

수원지방법원 2024. 5. 22 선고 2023나5014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수원지방법원 2024. 5. 22 선고 2023나50141 판결

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2. 12. 13 선고 2022가단10882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, 유병연, 김정원, 박환철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권우상

피고, 피항소인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손현태

변론종결 2024. 4. 17.

판결선고 2024. 5. 22.

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2. 12. 13. 선고 2022가단10882 판결

주문

-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-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3 지분에 관하여, C과 피고 사이에 2019. 7. 22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.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별지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류창성, 판사 염혜수, 판사 홍미옥